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4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예고

####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학교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정함(안 제3조).
-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4조).
- 다.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라. 학교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solucky@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사항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프로그램 등에 관한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제1항의 각 호 사항이 포함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은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학교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인명 구조와 더불어 안전조치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매뉴얼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유형별 사후조치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안전사고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안전점검·학교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예술건강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안전총괄과장, 시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법률, 건축, 안전, 의료, 교육 분야의 전문가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학교의 장 또는 학부모
4. 그 밖에 학교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 학교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

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훈련 등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학교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 교육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①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안전점검 참여 방법 및 전문가의 자격기준,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